

2019

예술의전당 공연장 대관규약



오페라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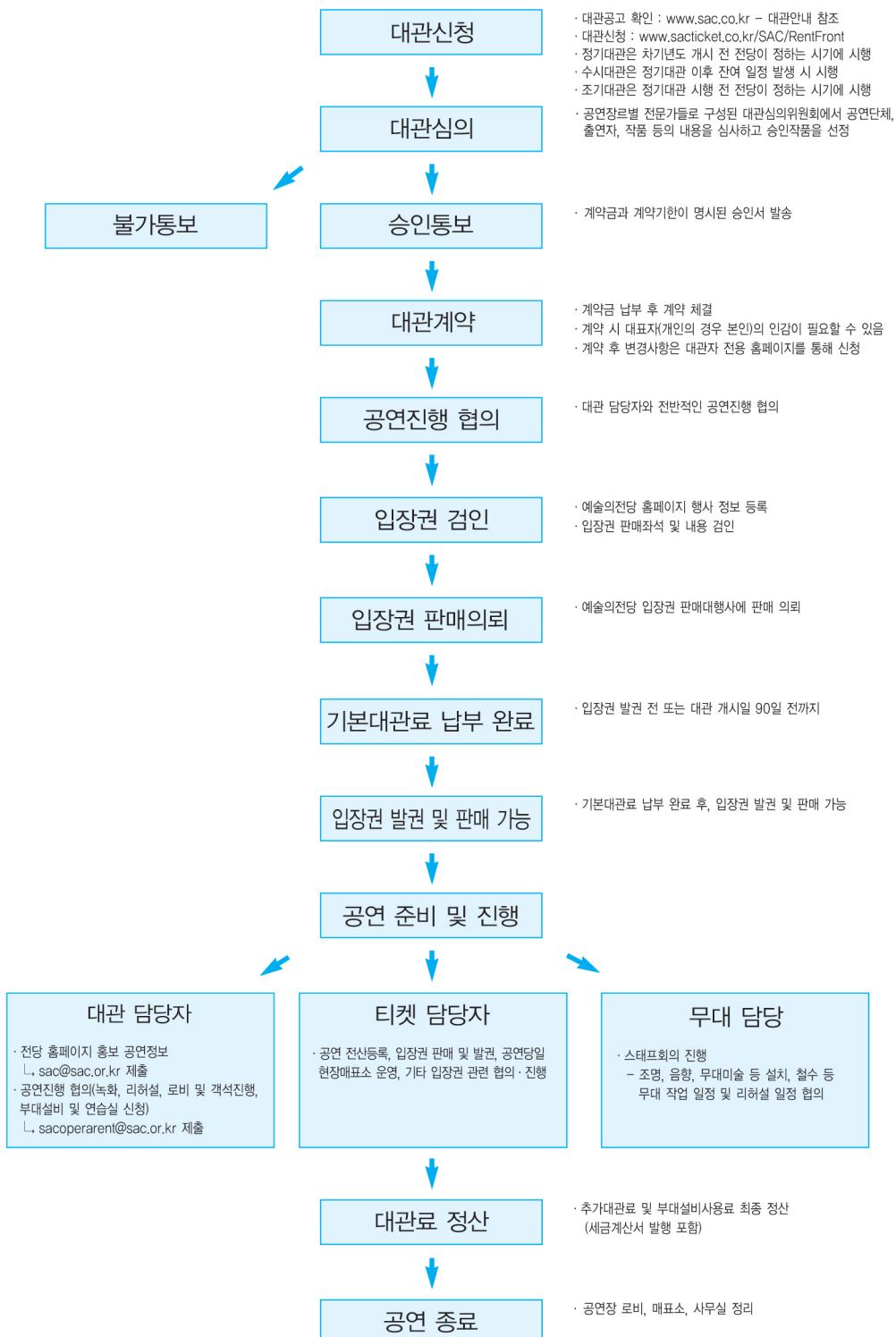
차례

I 대관업무 절차	2
II 대관규약 총칙	3
III 대관료	4
IV 대관신청 및 승인	5
V 대관승인 취소, 내용변경 금지, 공연취소 및 계약해제	6
VI 입장권 발권 및 판매	8
VII 공연장 사용 및 관리의무	11
VIII 공연진행 및 스태프 회의	13
IX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	15
X 홍보 및 방송, 녹화 협의	17
XI 기타	18
부칙 1 – 오페라하우스 대관료	19
부칙 2 – 스태프 회의 제출서류	25
부칙 3 – 무대안전수칙	26

★ 유의사항 ★

- ▷ 제 5조 (대관료)
- ▷ 제12조 (입장권 발권)
- ▷ 제19조 (공연 진행 협조)
- ▷ 제22조 (오염물질 및 공기질 관리)
- ▷ 부칙 I – 오페라하우스 대관료

| 대관업무 절차



II 대관규약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약은 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고 한다) 오페라하우스(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대관 및 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관의 정의)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및 이와 관련한 부수행위 등의 시행을 목적으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공연장의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를 대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 ①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조기대관으로 구분한다.
 - 가.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공연일정에 대하여 매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대관으로 차기년도 개시 이전 전당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 승인,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통해 시행한다.
 - 나. 수시대관은 정기 대관 확정 이후 공연 취소 등의 사유로 잔여일정이 발생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 다. 조기대관은 우수 공연 유품 등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기대관 시행 이전에 차기년도 이후의 공연일정에 대하여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 ②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공연준비대관, 철수대관, 연습실대관 및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 가. 공연대관은 입장권 발권을 수반하는 공연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연장을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공연준비대관은 공연대관 이전에 무대 세트 및 장비 설치, 리허설 등 공연의 준비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철수대관은 최종회차 공연을 종료한 이후 무대 세트, 장비 등의 철수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라. 연습실대관은 공연 준비에 추가로 필요한 연습을 위하여 오페라하우스 내 위치한 각각의 연습실을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마. 기타대관은 공연 목적 이외에 방송, 영화, CF, 음반제작 등을 위하여 공연장, 객석, 로비 등을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대관자의 정의)

대관자란 정기대관, 수시대관, 조기대관 등의 대관절차를 완료하고 전당과 대관 계약을 체결한 주최자 (기획사 또는 개인)를 말한다.

III 대관료

제 5 조 (대관료)

- ① 대관료는 기본대관료와 부대설비사용료로 구분하며, 「부칙 1 – 오페라하우스 대관료」에 준한다.
 - 가. 기본대관료란 공연을 위하여 무대 및 공연장의 기본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준비대관과 공연대관, 철수대관으로 구분한다,
 - 나. 부대설비사용료란 기본대관료 이외에 대관자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여 사용한 후 추가로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한다.
- ②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시 기본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장권 발매 전, 또는 대관 개시일 9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공연승인일로부터 대관 개시일까지의 일수가 90일 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한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 ③ 대관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추가 대관료는 공연 종료 후 부대설비사용료 등의 납부시점까지 납부해야 한다.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미납 시 차기 공연의 티켓 판매, 추후 대관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④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조치 한다.
 - 가. 전당 구내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액의 100%)
 - 나. 전당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액의 100%)
 - 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연준비대관일로부터 오페라극장, CJ 토월극장은 180일 이전에, 자유소극장은 150일 이전에 대관취소를 신청하여 전당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액의 50% 환급 조치)
- ⑤ 전당은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IV 대관신청 및 승인

제 6 조 (대관신청)

- ①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전당 홈페이지(www.sac.co.kr)에서 대관 공지 및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대관자 전용 홈페이지(www.sacticket.co.kr/SAC/RentFront)를 통해 접수한다.
- ②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연습실 대관신청 등은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하며, 전당 홈페이지(대관안내 / 대관신청서식 / 오페라하우스)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은 후 작성하여 대관담당자에게 송부한다.
- ③ 전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 가.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나. 전당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해손할 우려가 있거나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다. 본 규약의 제 8조에 의거하여 신청자격이 정지 상태인 자의 신청
 - 라.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 행사
 - 마.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바. 벌점(벌점항목 및 기준은 제8조 2항 참조) 누적이 100점을 초과하는 공연단체 또는 개인

제 7 조 (대관승인)

- ① 전당은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유선 또는 서면(전자 메일 포함)으로 개별 통보한다. 단, 공연대관 이외의 연습실, 현수막 등 부대설비사용 신청과 관련한 결과는 신청서와 유선 승인 통보로 이를 대신한다.
- ② 대관승인을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고 한다)는 계약금 등의 납부 후 「대관승인 통지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전당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대관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필요할 경우 직인 날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 ③ 전당은 대관신청의 승인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정, 대관기간 및 내용의 조정 등을 신청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④ 전당은 대관 승인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공연과 관련한 자료의 추가적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접수한 대관자는 전당의 문서발송일(또는 대관자에게 최초로 문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 및 요구자료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관승인 취소, 내용변경 금지, 공연취소 및 계약해제

제 8 조 (대관 승인 취소 및 신청자격 중지, 벌점 부과)

- ① 다음과 같은 경우 전당은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전당은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 대관 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가 대관승인 후 대관 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나 전당이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 계약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다 전당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 라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 마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바 이 규약을 위반한 경우
- ② 다음과 같은 경우 전당은 벌점을 부과한다. 단, 다음의 저적 사항에 대한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당이 이를 인정할 경우, 기 부과된 벌점을 취소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가.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100점)
 - 나. 기본대관료 또는 부대설비사용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100점)
 - 다. 대관규약에 따르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점)
 - 라. 전당이 승인하지 아니한 판매대행사에 입장권 발급을 의뢰한 경우 (50점)
 - 마. 전당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공연 명칭, 세부 일정 등을 변경한 경우 (50점)
 - 바. 전당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입장권 및 초대교환권 제작 또는 발행, 기타 객석수를 초과하여 관객이 올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하거나 방지한 경우 (50점)
 - 사.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0점)
 - 아. 대관 승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0점/건당)
 - 자. 공연일로부터 180일~90일 기한에 취소한 경우 (30점/건당)
 - 차. 공연일로부터 90일 미만 기한에 취소한 경우 (50점/건당)
 - 카.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연일로부터 90일 미만 기한에 취소한 경우 (100점/건당)
 - 타. 리허설 및 공연진행 시 전당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시행할 경우 (50점/건당)
 - 파. 대관 신청 시 또는 내용 변경을 통하여 승인받지 않은 공연단체 또는 개인을 임의로 출연시킨 경우 (50점)

제 9 조 (내용변경 및 일정변경)

- ① 대관자는 대관 승인시 명시된 공연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세부사항(공연 명칭, 세부 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관자가 공연준비 시작일 전에 대관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공연준비대관은 취소 일정(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야간 4시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에 대한 기본대관료의 50%, 공연대관은 공연 일정(1일 1회 공연 시행으로 간주)에 따른 기본대관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소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당 스태프와 사전 협의되어 일정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일정에 대하여 대관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공연준비기간이 시작된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대관기간 중 공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관자는 공연대관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 ④ 전당은 대관자가 공연장 또는 부대설비사용에 있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료를 부과한다.
- ⑤ 공연대관은 평일 및 토요일 각 2회, 일요일 1회를 기준으로 하며 1주간 최대 9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어린이공연 등 일 2회 공연을 다수 시행하는 공연은 예외로 한다.
- ⑥ 평일 및 토요일의 공연시작은 오후 3시 및 저녁 7시30분, 일요일은 오후 4시 공연을 기준으로 한다.
단, 어린이공연 등 일 2회 공연을 다수 시행하는 공연은 예외로 한다.

제 10 조 (대관 취소)

- ① 대관자는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 5조 4항에 의하여 처리되며, 대관취소 벌점이 부과된다.

제 11 조 (공연 취소 및 중지)

- ①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 일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② 공연 일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 5조 4항, 제 9조 2항 및 3항에 의거, 처리된다.
- ③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상호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 이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취소된 공연에 대하여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고,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 ④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계 결함이나 전당 및 대관자와 계약관계가 없는 제 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되어 공연회차가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전당의 대관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취소된 공연회차의 대관료 반환과 입장권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다만 전당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관자가 진다.

VI 입장권 발권 및 판매

제 12 조 (입장권 발권)

① 대관자는 좌석배치 시 전당 표준좌석등급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 등급 명칭과 각 등급별 좌석수를 제한받는다.

가. 최고등급의 명칭은 R석으로 하며, 등급명칭은 R, S, A, B, C, D의 순으로 한다. 단, 오키스트라 피트석을 판매할 경우에는 OP석 등급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나. 표준좌석등급 운영 및 분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각 극장별 표준좌석등급 분류 기준

· 오페라극장 : 3개 등급에서 6개 등급까지 분류 가능 (6개 이상 좌석등급 구분 불가)

· CJ 토월극장 : 3개 등급에서 4개 등급까지 분류 가능

· 자유소극장 : 1개 등급에서 3개 등급까지 분류 가능

– 등급별 좌석 수 분류 기준

· 표준좌석등급표는 오페라극장, CJ 토월극장 일반 판매석(하우스석 포함) 기준으로 작성

· 각 등급별 수치는 각 등급별로 배정할 수 있는 최대 수치

· 최고 기준보다 좌석수를 적게 배정한 경우, 그 차수만큼 하위등급에 좌석 배정 가능

– 등급별 허용 최대 좌석수 표

〈 오페라극장 〉

분류 구분	R	S	A	B	C	D	Total
3개 등급		1,213	378	334			1,925
4개 등급	658	555	378	334			1,925
5개 등급	658	453	316	164	334		1,925
6개 등급	658	453	102	214	164	334	1,925

〈 CJ 토월극장 〉

분류 구분	R	S	A	B			Total
3개 등급	490	224	128				842
4개 등급	426	205	121	90			842

다. 기타 좌석 판매 시, 적용기준

– 훨체어석 판매 시, 아래 기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a) 1층 훨체어석 가격은 2층 일반판매 등급 중 최저가 좌석의 50%를 적용한다.

 b) 2층 훨체어석 가격은 3층 일반판매 등급 중 최저가 좌석의 50%를 적용한다.

(CJ 토월극장에 한함)

 c) 3층 훨체어석 가격은 4층 일반판매 등급 중 최저가 좌석의 50%를 적용한다.

(오페라극장에 한함)

– 자막 시야제한석 판매시, 아래 기준에 따라 등급과 가격을 결정한다.

 a) 전석 매진된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현장 매표소에서의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b) 각 블록별 앞줄 좌석등급과 동일한 좌석 등급으로 판매한다.

- 관람 시야제한석 판매 시, 아래 기준에 따라 등급과 가격, 판매방법을 결정한다.
 - a) 전석 매진된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현장 매표소에서의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 b) 각종의 관람 시야제한석 가격은 각종 일반판매 등급 중 최저가 좌석의 50%를 적용한다.
- ② 전당은 외부 판매대행사를 통해 전당의 매표업무(전산등록, 발권·판매, 정산)를 위탁 운영하며, 전당의 위탁판매대행사 및 타 판매대행사(연동사)를 이용하여 입장권을 발권하는 것으로 전당의 입장권 판매를 대신한다.
- ③ 대관자는 입장권 판매 시작 전에 전당에게 입장권 검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전당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외부 판매대행사(이하 ‘위탁판매대행사’라 한다)에게 대관승인 내용과 동일한 공연명, 공연일시(회차), 장소, 주최, 후원 등을 명시하여 입장권을 판매 의뢰 할 수 있다. 판매 의뢰 후, 일부 내용이 변경될 경우 대관자는 전당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입장권 판매 시작일(티켓 오픈일)은 대관자가 정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전당이 지정하는 주휴일(일요일, 월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티켓 오픈일을 지정한다.
- ⑤ 대관자는 대관료 잔금 납부 후 초대교환권 발행이 가능하다. 초대교환권은 전당의 위탁판매대행사를 통해 전산 발권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 가. 초대교환권의 수량은 지정좌석 수의 100%를 한도로 발권 가능하다. 이 경우, 대관자는 해당 수량만큼의 판매좌석을 초대교환권의 효력이 정지되는 시점까지 유보 또는 미판매좌석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나. 초대교환권에 해당하는 지정좌석권의 수령은 해당 공연 당일 비타민스테이션 내 서비스플라자에서 수령한다.
 -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좌석권을 공연일 이전에 수령해야 할 경우, 사전에 대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라. 임의로 초대 교환권을 제작·인쇄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전당은 이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 ⑥ 전당은 공연 모니터링 및 벤치마킹, 원활한 공연장 운영 등을 위하여 일부 좌석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하여 사용한다. 하우스티켓은 아래 지정된 좌석을 기준으로 하되, 공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당과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 가. 오페라극장 : 1층 B블록 14열 1~4번, 1층 C블록 14열 1~4번, 2층 B블록 2열 1~4번,
2층 C블록 2열 1~4번 (각 공연 매 회당 16석)
 - 나. CJ 토월극장 : 1층 A블록 9열 9~12번, 1층 B블록 10열 13~16번, 1층 B블록 11열 1~4번,
1층 C블록 13열 1~4번 (각 공연 매 회당 16석 / CJ 문화나눔 좌석 포함)
 - 다. 자유소극장 : 1층 A블록 9열 7~10번, 1층 B블록 4열 1~2번 (각 공연 매 회당 6석)
- ⑦ 대관자는 객석 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권할 수 없으며, 각 공연장의 객석 수는 다음과 같다.
 - 가. 오페라극장 (총 좌석 수 : 2,283석)
 - 일반 판매석 : 1,977석 (일반석 1,909석 / 휠체어석 20석 / OP석 48석)
 - 하우스진행석 : 16석
 - 판매 유보석 : 290석 (자막 시야제한석 48석, 관람 시야제한석 242석)
 - 나. CJ 토월극장 (총 좌석 수 : 1,004석)
 - 일반 판매석 : 899석 (일반석 826석 / 휠체어석 10석 / OP석 63석)
 - 하우스진행석 : 16석
 - 판매 유보석 : 89석 (관람 시야제한석 89석)

다. 자유소극장 (총 좌석 수 : 309석)

– 일반 판매석 : 215석 (1층 정면석 156석 / 2층 정면석 17석 / 2층 측면석 20석 / 3층석 18석 / 휠체어석 4석)

– 하우스진행석 : 6석

– 판매 유보석 : 20석 (관람 시야제한석 20석)

※ 상기의 자유소극장 좌석 외에 추가 좌석 등을 공연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가능하나 최대 68석을 초과할 수 없다.

- ⑧ 위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해 발권되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전당은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당은 공연장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 13 조 (입장권 위탁 판매)

- ① 대관자는 전당의 위탁판매대행사에게 입장권 판매대행을 의뢰한다.
- ② 대관자와 위탁판매대행사에게 “입장권 판매대행 의뢰를 요청하는 자”가 다를 경우, 대관자는 전당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대관자는 전당의 위탁판매대행사 시스템과 이미 연동이 체결된 타 판매대행사(연동사)와의 실시간 좌석 공유 및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타 판매대행사(연동사)의 판매 및 정산에 관한 업무 일체는 전당의 위탁판매대행사에서 대행한다. 단, 연동이 불가능한 별도의 타 판매대행사(별도 연동사)를 추가로 선택할 경우, 별도로 할당 판매하며, 정산도 별도로 처리한다.
- ④ 전당의 위탁판매대행사나 타 판매대행사(연동사), 기타 판매대행사에서 할당 판매하고자 할 경우 전당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전당을 방문하는 온·오프라인 고객을 위해 해당 공연장 각 등급별 총 좌석수 대비 30% 이상의 좌석을 등급별로 전당에서 할당 판매하여야 한다.
- ⑤ 대관자는 전당에 대관료 잔금을 납부한 이후, 티켓 판매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판매를 위한 입장권 전산등록 요청은 대관료 계약금 납부 이후 바로 진행 할 수 있다.
- ⑥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대관자는 전당 회원에게 1인당 5매까지 10% 이상의 할인율을 제공해야 하며, 전당은 월간 정보지와 홈페이지에 할인 내용을 고지한다. 여기서 전당 회원이란 전당 시스템 내에서 회원 인증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 ⑦ 대관자는 8세 미만 아동의 입장을 제한하는 전당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연의 특성상 입장 연령을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당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입장권을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대관자는 대관자의 부담으로 행사 당일 미취학 아동의 입장권에 대하여 환불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원 또는 전당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⑧ 전당의 위탁판매대행사는 타 판매대행사(연동사)와 실시간 좌석을 공유하여 판매하고, 전당의 서비스 플리자나 현장매표소에서 판매된 좌석에 대해 통합 발권서비스 및 통합 정산보고서 기능을 제공한다.
- ⑨ 대관료 및 부대시설비용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전당은 위탁판매대행사에게 지급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 ⑩ 대관자는 전당의 위탁판매대행사와 타 판매대행사(연동사)에서 판매된 정보(예매정보 및 통합정산 보고서)를 전당에게 제공해야 한다.

VII 공연장 사용 및 관리의무

제 14 조 (예술의전당 공공 정책 참여)

- ① 공공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인 전당의 오페라하우스 내 공연장을 대관하는 자는 아래 ②호와 같은 공공성 확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참여 방식은 사전에 전당과 협의한다.
- ② 공공성 확대 정책
 - 삭티우미 회원 할인
 - 청소년 리허설 무료 관람
 - 청소년 및 문화바우처카드 소지자 당일티켓할인
 - 정부정책에 따른 문화패스, 예술인패스, 문화옹성카드 할인
- ③ 대관자는 문화옹성과 청소년 보호 및 고객 정보제공을 위해 공연의 내용 및 표현방식을 고려한 적정 관람등급을 운영하고 관련사항을 사전에 전당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④ 대관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에 온라인 예매 및 전산 발권 처리된 공연티켓 예매 정보(공연명 · 일시 · 장소, 예매 · 취소일시 및 금액, 예매자 연령 · 성별 등)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여야 한다. 제공된 정보는 전체 공연시장의 규모와 현황을 보여주는 기간, 지역, 장르, 티켓가격대 등 조건에 따라 종합된 통계로 공개된다. 단, 개별 공연에 대해서는 관객 수(무료 관객 수 포함)만 공개하고, 티켓판매금액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① 대관자는 전당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전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사용완료 즉시 대관자 부담으로 변경된 시설 등을 원상 복구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해야 하며, 대관자가 원상복구 및 철거를 지연할 경우 전당이 직접 철거 및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하고, 전당의 철거 및 폐기 조치로 발생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 전당은 책임지지 않는다.
- ③ 무대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공연 종료 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시설 사용)

- ①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및 로비, 무대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전당의 승인 없이 설치 할 수 없다.
- ② 대관기간 중 전당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공연기간 중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을 개최할 때는 전당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소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④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타극장의 공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7 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 ①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전당의 시설 및 설비 기타 부속시설 (열쇠, 분장실집기, 비품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전당에 대하여 이의 수리, 원상회복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전당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 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해서 전당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
- ③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 공연 또는 공연준비, 철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전당이 입은 손해 및 전당이 제3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손해보상, 기타 책임에 대하여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거나 대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관자가 진다.

VIII 공연진행 및 스태프 회의

제 18 조 (공연 진행의 정의)

공연 진행이란 공연기간 뿐만 아니라 공연준비 및 철수기간을 포함한 공연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 19 조 (공연 진행 협조)

① 스태프회의

- 가. 대관자는 무대작업 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사용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공연준비기간 시작일 보다 최소 7일 전까지 전당의 주관하에 전당의 무대스태프와 스태프회의를 하여야 한다.
(단, 극장 건축물을 이용한 장치의 설치 및 고하중 특수장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제작 단계에서 사전에 전당 무대기술 스태프들과 안전 및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나. 대관자는 공연장식 및 소품 등으로 화기(담뱃불, 촛불, 불꽃, 회약 등)를 이용한 특수효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체효과기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화기를 사용할 경우 스태프회의에서 화기 사용 계획 및 화기 관리계획, 「가연물/발화물질 반입 및 설치사용 승인서」를 제출하고,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 참조)
- 다. 무대장치의 디자인 및 설치시 전당의 소방시설물(방화막 Safety Curtain)이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라. 전당의 스태프회의 진행자는 회의를 통한 협의사항을 취합하여 「스태프 회의 협의서」를 작성, 전당과 대관자의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

- 가. 대관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부칙 3 무대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전당 기술진의 감독 하에 작업해야 한다.
- 나. 공연과 관련된 무대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전당 무대감독이 진다.
- 다. 대관자는 공연 외적인 목적(정치, 상업, 특정종교, 행사 등)으로 무대(확성장치 포함)를 사용할 수 없다.
- 라. 대관자는 백스테이지 출입시 전당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전당은 백스테이지 출입을 불허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출입증의 발행을 위해 대관자는 백스테이지 출입자명단을 공연 준비 시작일에 맞춰 전당 무대 감독과 출연자 출입구 경비실에 제출해야 하며, 전당은 공연 종료 시 출입증 반납 확인 후 미반납분에 한하여 부대시설 사용료와 함께 분실비용을 청구한다.
- 마. 기타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는 전당의 무대수칙에 따른다.

③ 공연진행

- 가.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전당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공연진행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화재, 무대 붕괴, 기타 긴급사태 – 공연출연자, 무대시설 등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시 전당 무대감독 또는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나. 전당은 공연진행과 관련한 하우스운영(객석관리, 공연진행, 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며, 하우스매니저가 총괄 운영한다.
- 다. 대관자는 로비 및 객석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하우스매니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라. 전당은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공연 당일 미취학 아동 및 기타 부득이한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입장권을 환불 조치할 수 있다.
- 마. 대관자는 객석이나 로비로 화환을 반입할 수 없으며, 공연 장르에 따라 입장 연령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티켓판매 개시 전 반드시 전당과 협의해야 한다.
- 바. 전당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우스를 운영하며 대관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 예술의전당 공연 관람 시 유의사항

1. 취학(초등학교) 전 어린이는 공연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단, 어린이 대상 공연 제외)
2. 공연시작 전 입장이 원칙이며, 공연시작 후에는 하우스 어텐더트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공연특성에 따라 입장 불가할 수 있음)
3. 공연장내에서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내 촬영, 녹음 불가)
4. 음식물, 카메라, 꽂디발, 애완동물 등을 공연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5. 입장권 환불 및 변경은 공연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환불수수료 공제), 공연 당일 변경, 환불은 불가합니다.
6. 초대권은 비매품이므로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7. 승용차 이용 시 주차장이 훈집하여 공연장 정시 입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으로 공연장 입장 지연 시, 티켓 교환 · 환불 불가)
8. 주차요금은 공연장 로비의 <주차 정산기기>를 이용하여 사전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대관자는 전당의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과 포스터를 아래와 같이 전당에 공연시작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3주 이상 장기공연일 경우에는 아래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30부, 포스터 3장을 제출해야 한다.
 - 오페라극장 : 프로그램 30부, 포스터 3장
 - CJ 토탈극장 : 프로그램 20부, 포스터 3장
 - 자유소극장 : 프로그램 15부, 포스터 3장
- 아. 24회, 3주 이상 장기 공연의 경우, 월요일 휴무를 기본으로 한다.

IX 가연물 및 발화물질, 오염물질 및 공기질 관리

제 20 조 (가연물 및 발화물질의 정의)

가연물이란 공연을 위한 장치물, 대도구 등에 쓰이는 각종 천류, 목재류, 화학약품 등을 말한다. 발화물질은 휘발유, 시너(thinner), LP가스 등의 인화성물품과 직접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성냥, 라이터, 촛불, 화약류 및 용접기 등을 말한다.

제 21 조 (발화물질 관리)

①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

- 가. 발화물질은 반입을 불허하되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대관자는 「가연물/발화물질 반입 및 설치사용 승인서」를 전당 비상안전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전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대관자는 발화물질 사용 및 설치 시 전당의 요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전당의 「무대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염관리

- 가. 대관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소방법이 정한 방염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 기관에서 인증한 방염필증과 방염시험성적서를 장치물 반입시 전당 비상안전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대관자는 반입물품과 방염필증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물품과 동일한 재질과 색상의 시료품(가로 29Cm x 세로 19Cm)을 스태프회의 혹은 장치반입 시작일 전까지 전당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거나, 반입물품에서 채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다. 대관자는 기존 방염성능 성적서를 발급받은 3년 이내의 재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 검사기관의 재발급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3년 이상 경과한 재사용 물품과 새로이 추가되는 방염대상 물품은 반드시 방염성능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라. 대관자는 전당 소방안전관리자 혹은 공간관리자가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제 22 조 (오염물질 및 공기질 관리)

- ① 대관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준수를 위하여 공연장 및 로비에 설치하는 시설물 제작에 친환경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실내 환경오염발생 제품 사용을 자제해야한다. 기타 불가피하게 시설물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아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제10조 제1항 관련) 유지기준

(단위: mg/m²·h)

구분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エン
접착제	0.12	2.0		
페인트		2.5		
실란트		1.5		0.080
퍼티		20.0		
일반자재		4.0		

※ 오염물질은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되,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방출농도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단 실란트의 경우 오염물질별 단위는 mg/m · h로 적용.

※ "일반자재"란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중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를 제외한 건축 자재를 말함.

※ 관계법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법률 제10789호, 2011.6.7 탄법개정)

X 홍보물 및 방송, 녹화 협의

제 23 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 ① 대관자는 공연장 로비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전당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연 협찬사 또는 후원사 등의 상업적인 홍보 판촉물일 경우는 이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② 대관자는 공연 관련 홍보 보도 자료를 전당에 제출해야 한다.
- ③ 대관자는 전당 홈페이지 내 대관공연 홍보를 위하여 공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연관련 세부 내용을 sac@sac.or.kr로 제공해야 한다.
- ④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이전에 공연 홍보나 광고를 시작할 수 없다.
- ⑤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전당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전당이 규정하는 로고 및 CI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24 조 (방송 및 녹화 등)

- ① 전당에서 행해지는 공연준비 및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전당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중계위치, 시설사항, 촬영범위 등에 관하여는 전당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 ②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은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판매되었을 경우에는 공연시작 전, 해당 좌석의 교환 좌석을 준비하여 하우스매니저에게 위탁해야 한다.

XI 기타

제 25 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전당과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6 조 (항변권)

- ① 대관자는 전당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항변할 수 있다.
- ② 전당은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당은 그에 따른 배상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7 조 (규약변경 승인 등)

- ①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전당은 대관자에게 변경규약의 시행 1개월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대관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당에 서면접수 해야 한다. 만약 대관자가 위 기한 내에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제 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 28 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당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29 조 (관할법원)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당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 30 조 (규약위반시의 책임)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31 조 (적용시기)

본 규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1 – 오페라하우스 대관료

1. 기본대관료 – 공연대관료

(단위 : 원 / VAT 별도)

구 분	장 르	사 용 료 (1회)
오페라극장	오페라, 발레 등	4,750,000
	뮤지컬, 기타	8,800,000
CJ 토월극장	연극, 무용 등	1,190,000
	오페라, 발레 등	1,700,000
	뮤지컬, 기타	3,300,000
자유소극장	모든 공연	620,000

- ① 공연대관은 공연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공연종료 시간까지를 말한다. 공연 시간은 인터미션 포함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철야대관료(150%)를 적용, 10분 단위로 정산하여 대관료를 부과한다. 단, 공연대관 진행 중이라도 공연대관의 준비시간 부족, 공연기간 중 준비대관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협의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추가하여 대관할 수 있다. 이 경우, 1시간 단위 추가대관의 대관료는 해당 시간대 공연준비대관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 ② 공연대관료는 공연 횟수(발권한 티켓의 가격 및 판매유무와 상관없이 공연 티켓을 발권하는 회차 전체)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오페라극장 대관료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한다.
- 가. 오페라, 발레 등에 속하는 공연
 - 오페라, 발레 공연
 -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공연
 - 기타 창작 음악극, 창극, 클래식 연주회 등
 - 나. 뮤지컬에 속하는 공연
 - 창작 및 해외 뮤지컬 일체
 - 기타 위 오페라, 발레 등에 속하지 않는 공연 일체
 - 24회 3주 이상의 장기 공연
- ④ CJ 토월극장 대관료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한다.
- 가. 연극, 무용에 속하는 공연
 - 연극, 현대 무용 공연
 - 나. 오페라, 발레 등에 속하는 공연
 - 오페라, 발레 공연
 -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공연
 - 기타 창작 음악극, 창극, 클래식 연주회 등
 - 다. 뮤지컬에 속하는 공연
 - 창작 및 해외 뮤지컬 일체
 - 24회 3주 이상의 장기 공연 (단, 연극 및 무용은 제외)
 - 기타 위 오페라, 발레 등에 속하지 않는 공연 일체

- ⑤ 기본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해당극장의 무대와 기본 조명기기, 음향기기 및 기계장치
 - 객석 및 하우스매니저와 하우스 어텐던트 등 객석관리 서비스
 - 공연 및 총연습 중 냉난방
 - 출연자휴게실 등 공용시설 및 공간
 - 해당 분장실
 - 사용기간 : 공연 2일전부터 공연기간 동안
 - 분장실수 : 오페라극장 18실 이내, CJ 토월극장 10실 이내, 자유소극장 2실 이내
 - 사용시간 : 저녁공연은 오후 1시—공연종료, 낮공연은 오전 10시—공연종료 시간까지

2. 기본대관료 – 공연준비대관 및 철수대관

(단위 : 원 / VAT 별도)

구 분	장 르	오전(09~12)	오후(13~17)	야간(18~22)	비 고
오페라극장	오페라, 발레 등	2,137,500	2,850,000	3,800,000	
	뮤지컬, 기타	3,960,000	5,280,000	7,040,000	
CJ 토월극장	연극, 무용 등	535,500	714,000	952,000	
	오페라, 발레, 음악회 등	765,000	1,020,000	1,360,000	
	뮤지컬, 기타	1,485,000	1,980,000	2,640,000	
자유소극장	모든 공연	279,000	372,000	496,000	

- ① 준비대관은 오전, 오후, 야간단위로 대관이 가능하다.
- ② 오전대관료는 공연대관료의 45%, 오후는 60%, 야간은 80%를 적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전대관은 3시간, 오후대관은 4시간, 야간대관은 4시간을 적용한다.
- ③ 대관기간 중 공연준비대관을 추가하는 것은 해당일보다 최소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당일 추가 대관 신청은 불가하다.
- ④ 공연준비대관을 신청한 경우, 이를 미사용할 경우에도 대관료를 부과한다. 단, 전당 스텁과 사전 협의되어 조정된 경우에는 대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⑤ 철수대관이 완료되는 시점은 철수 대상 장비와 세트가 장치반입구 밖으로 모두 반출되는 시간까지를 말한다.
- ⑥ 공연준비기간과 공연기간 구분 없이 공연준비를 위한 대관일 경우에는 공연기간 중이라도 공연준비 대관료에 준한다.

3. 기본대관료 – 기타 대관

(단위 : 원 / VAT 별도)

구 분	무대 + 객석	객 석	공연장 로비
오페라극장	8,400,000	4,200,000	4,200,000
CJ 토월극장	5,000,000	2,500,000	
자유소극장	2,000,000	1,000,000	

- ① 기타대관은 방송, 영화, 녹화, 뮤직비디오, CF 제작, 행사 등을 위한 대관에 적용한다. (1회 3시간 기준, 초과 시 시간 단위로 추가 요금 적용)
- ② 분장실은 1실 사용료로 회당 200,000원(부가세 별도)을 적용한다. 회당 사용 기준시간은 3시간이며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새로운 회차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 ③ 추가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이며, 무대+객석 대관자에 한하여 분장실 2실을 무료로 제공한다.
- ④ 공연장 로비 내부 공간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공연장 로비의 제반 시설물의 사용이 수반될 경우 로비 사용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연습실 대관

(단위 : 원 / VAT 별도)

구 분	1시간당 사용료		면 적	비 고
	30시간 이하	31시간 이상		
오페라연습실	120,000	100,000	300m ² (90평)	
발레연습실	120,000	100,000	268m ² (81평)	
연극연습실	90,000	60,000	131m ² (39평)	
무용연습실	70,000	60,000	131m ² (39평)	
합창연습실	70,000	60,000	133m ² (40평)	

- ① 1일 3시간 이상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기본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공용설비 및 공간
 - 나. 해당 연습실에 비치된 업라이트 피아노
 - 다. 청소, 냉난방 등 기본 시설관리 유지
- ③ 전당 오페라하우스 대관단체의 연습실 대관 : 해당공연 연습 시 연습실 대관료 30% 할인

5. 부대설비사용료 – 시설 및 장비

(단위 : 원 / VAT 별도)

구 분	품 목	사 용 료	비 고
악기	삼익 그랜드 피아노(토월극장)	40,000	
	삼익 업 라이트 피아노	10,000	1일 1대 사용기준. 조율비 제외
무대 기계	오페라극장 하부기계	45,000	
	CJ 토월극장 하부기계	45,000	리허설 1회당 / 공연 1회당 1대 기준 (왜건, 경사무대, 텐테이블, 링, 리프트, CJ 토월극장 오케스트라 피트 무대전환 사용시)
	자유소극장 하부기계	18,000	
장치	오페라극장	무료	1작품당. 90㎡까지
	CJ 토월극장	무료	1작품당. 50㎡까지
	덧마루	자유소극장	무료
	덧마루	추가 (공통)	1작품당. 30m2까지 (오페라극장, CJ토월극장에 서 덧마루 이동 시 인력 대관자 부담)
	댄스플로어	오페라극장	100,000
		CJ 토월극장	설치 시부터 1일 기준 (설치 인력 및 테이프 대관자 부담)
		자유소극장	90,000
		오페라연습실	80,000
			400,000
	녹음 (마이크) 설치비	60,000	
	녹음 (CD)	20,000	공연 및 리허설 1회당 1대 기준 (공CD 대관자 부담)
	녹음 (멀티트랙)	16채널 이하	300,000
		32채널 이하	CJ 토월극장, 자유소극장 공연 및 리허설 시 멀티트랙 녹음 1회 기준 (채널별 상이, 사전 협의 필수)
		48채널 이하	500,000
음향	모니터스피커	10,000	공연 및 리허설 1회당 1대 기준(공연장 기본 설치 분 제외, 추가 사용 모니터 스피커에 적용)
	녹화 (HD 영상) – Full Shot 고정	100,000	공연 및 리허설 1회당 1대 기준 (USB-8G 대관자 부담)
	무선마이크	30,000	공연 및 리허설 1회당 1대 기준 (건전지 대관자 부담)
	스피커(CQ-1P), 서브우퍼(650P)	20,000	공연 및 리허설 1회당 1대 기준
	무선 인터컴	5,000	기본 제공 수량 외 초과 사용 시 공연 및 리허설 1회당 1대 기준 (기본제공수량 : 오페라극장 4대, CJ 토월극장 4대, 자유소극장 2대)
	자막시스템	90,000	공연 및 리허설 1회당 1대 기준
	프로젝터 사용	90,000	공연 및 리허설 1회 기준 (위치 이동불가, 7000ANSI), CJ 토월극장만 적용 대관자 운영(노트북 대관자 지침)
	확성1	오페라극장	100,000
		CJ 토월극장	MR, 유선마이크 1~3개, 10회 이상 시 10회차 부터 50% 할인 적용
		자유소극장	50,000
확성2	오페라극장	200,000	공연 및 리허설 1회 기준, MR, 유선마이크 4~10개이내, 10회 이상 시 10회차 부터 50% 할인 적용
	CJ 토월극장		
	자유소극장	100,000	

(단위 : 원 / VAT 별도)

구분	품 목	사용료	비 고
조명	프레즈널 스포트 라이트 (HMI 4KW)	50,000	공연 및 리허설 1회당 1대 기준
	팔로우 스포트 라이트 (크세논 3KW)	30,000	
	팔로우 스포트 라이트 (크세논 2KW)	30,000	
	프레즈널 스포트 라이트 (텅스텐 할로겐 5KW)	10,000	
	스보보다	10,000	
	PAR 64	2,000	
	SOURCE FOUR 라이트 (750W/575W)	2,000	
분장실		40,000	기본 사용 외 / 1일 1실 기준
의상	전당 의상 단가표 기준 (제작단가의 5%)		1일 1피스 기준, 공연종료 후 10일 이내 세탁 후 반납. 세탁비 대여자(단체) 부담
기타	오페라극장 귀빈실	450,000	1회 기준
	출입증 카드	30,000	1매 기준, 분실 시 부과
	외벽 현수막	12m X 6m 6m X 6m 4.5m X 6m	60,000 45,000 20,000 1일 기준
	로비 LCD 모니터 광고(기업홍보 및 판촉용 광고)	오페라극장 CJ 토월극장 자유소극장	500,000 300,000 100,000 공연 1회 기준 (15초이내 / 기본안내와 순회 상연)
	장소 사용 (공연장 대관 단체 외 기타대관 대관료 첨조)	홍보판촉용 부스 설치 오페라극장 리셉션 (1층) 오페라극장 리셉션 (전층) CJ 토월극장 리셉션(3층 전용로비) 자유소극장 리셉션 로비 사인회	300,000 2,000,000 3,000,000 1,500,000 300,000 150,000 2m ² / 1회 기준, 최대 6m ² 까지만 허용 공연 1회 기준 공연 1회 기준 공연 1회 기준 공연 1회 기준 1회 기준, (자유소극장의 경우 70,000원)
	방송, 녹화 중계	TV 인터넷 음향오디오 프레스콜	600,000 400,000 100,000 100,000 공연 1회 기준 공연 1회 기준 공연 1회 기준 (2채널, 전당 음향 소스 사용 시) 전당 음향 소스 사용시

- ① 모든 부대설비는 전당 승인 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 ② 부대설비사용료는 대관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③ 무대기계 중 백크로스 엘리베이터는 공연에 사용할 수 없다.
- ④ 무대조명기에 사용되는 필터는 기본대관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관자가 부담 한다.
- ⑤ 기타 부대설비 사용료에 명시 되지 않은 품목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 ⑥ 생성 2개월이 경과는 녹음, 녹화물의 이상은 전당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수령 후 확인 요망)
- ⑦ 공연 목적 이외의 장비는 무대에 설치 할 수 없다.
- ⑧ 홈페이지 등 온라인 광고가격은 별도로 정한다.
- ⑨ 공연진행 시 외부조명 콘솔을 운영할 경우, 항상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6. 부대설비용료 – 인력 지원

① 조명디자인 : 공연준비단계에서 첫 공연시 까지

(단위 : 원 / VAT 별도)

구 분	장 르	기 본	비 고
오페라극장	뮤지컬	2,000,000	1작품 기준 (동일 디자이너 작품 재공연시 해당 대관 료의 50% 적용)
	오페라, 무용, 연극	1,500,000	
	기타	700,000	
CJ 토월극장	뮤지컬	1,500,000	
	오페라, 무용, 연극, 창극	1,000,000	
	기타	500,000	
자유소극장	오페라, 뮤지컬, 연극, 무용	700,000	
	기타	300,000	

② 음향 디자인

(단위 : 원 / VAT 별도)

구 分	기 본	비 고
오페라극장	1,300,000	1작품 기준 (동일 디자이너 작품 재공연시 해당 대관 료의 50% 적용)
CJ 토월극장	800,000	
자유소극장	500,000	

부칙 2 – 스태프회의 제출서류

- ① 무대 도면 5부
- ② 조명 플랜 및 배치도 5부
- ③ 장비 반출입 확인서 (무대, 조명, 음향)
- ④ 공연대본 및 악보 5부
- ⑤ 공연진행 큐시트 5부
- ⑥ 공연 일정표 (셋업, 리허설 일정 등 포함) 5부
- ⑦ 공연 안내서
- ⑧ 출연자 및 스태프 출입자 명단
- ⑨ 분장실 배치표
- ⑩ 세탁실 사용계획서
- ⑪ 가연물/발화물질 반입 및 설치 사용 승인서, 화기사용계획서, 화기관리계획서 각 1부
(가연물 및 발화물질, 화기 사용 시 제출)
- ⑫ 방염서류 (홈페이지 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규정 참조)
- ⑬ 프로그램 10부, 포스터 3장
- ⑭ 공연장 로비 모니터 송출용 이미지 (ex. 공연일정, 메인 이미지 등)
* 권장 사이즈 : 해상도 1,920 × 1,080 (16:9) JPG 파일 최대 3컷
- ⑮ 오페라하우스 하우스진행 신청서

부칙 3 – 무대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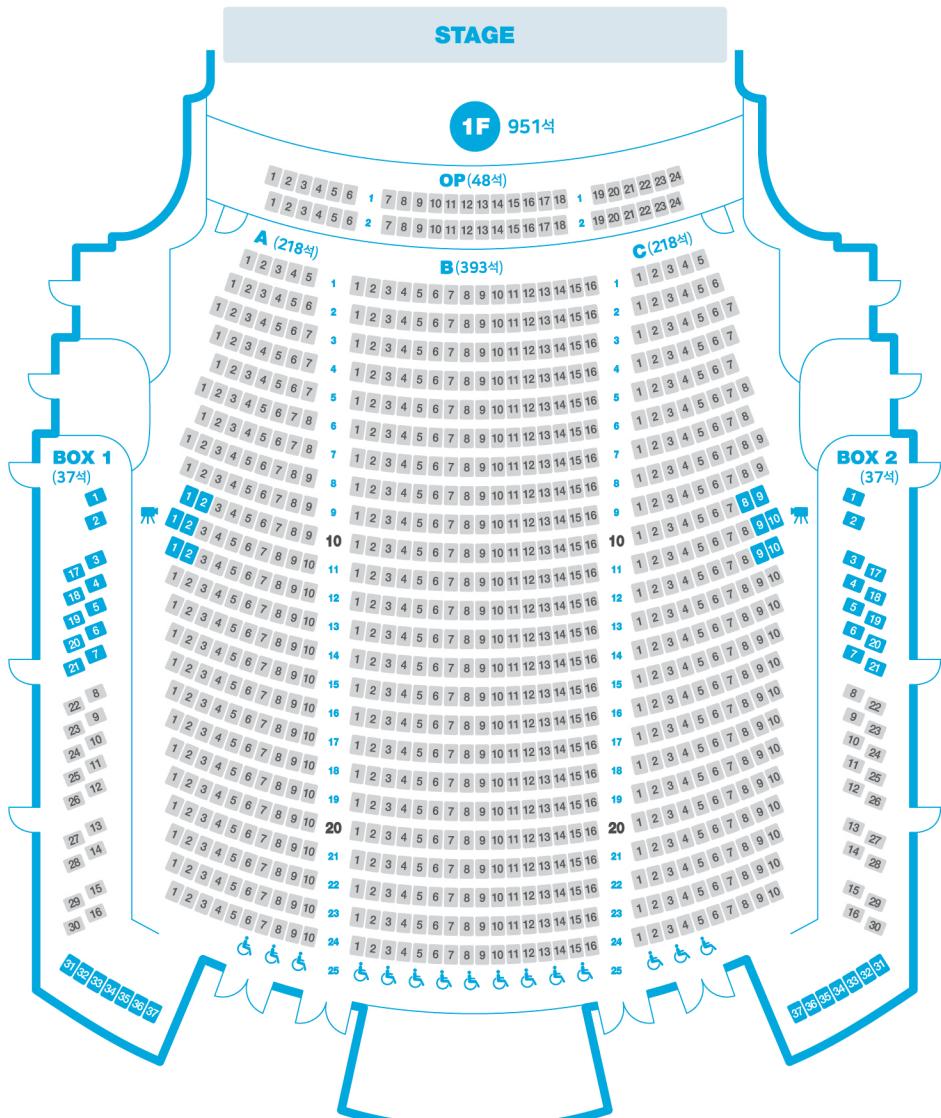
**모든 시설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무대 근무자, 사용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미승인 가연물과 발화물질의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 승인된 가연물과 발화물질의 반입, 설치, 사용 시 안전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 승인된 가연물과 발화물질의 인접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필요 시 옥내소화전을 전개해야 합니다.
- 무대에서의 설치, 제작, 운전, 시험 등은 무대직원의 입회하에 시행합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제 53조(과태료)에 의하여 방화막 작동 위치에는 어떠한 시설물 및 무대세트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 무대와 부속공간에서 무대장치물의 제작 및 가공과 관련된 일체의 작업을 금지합니다.
- 공연과 관련이 없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 공연준비 작업, 리허설 및 공연진행 시 객석에서 무대로, 무대에서 객석으로 이동하는 것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무대리프트 및 오케스트라 피트가 내려가 있을 시 스태프는 안전로프 및 차단봉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대 출입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화재 등 비상 시에는 안내표지판과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여야 합니다.
- 리허설과 공연이 끝난 후 사용한 시설, 장비, 비품 등을 제자리에 정리 정돈합니다.
- 무대 및 분장실 등에서 음주, 흡연, 도박, 취식 행위를 금지 합니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총 2,283석

Opera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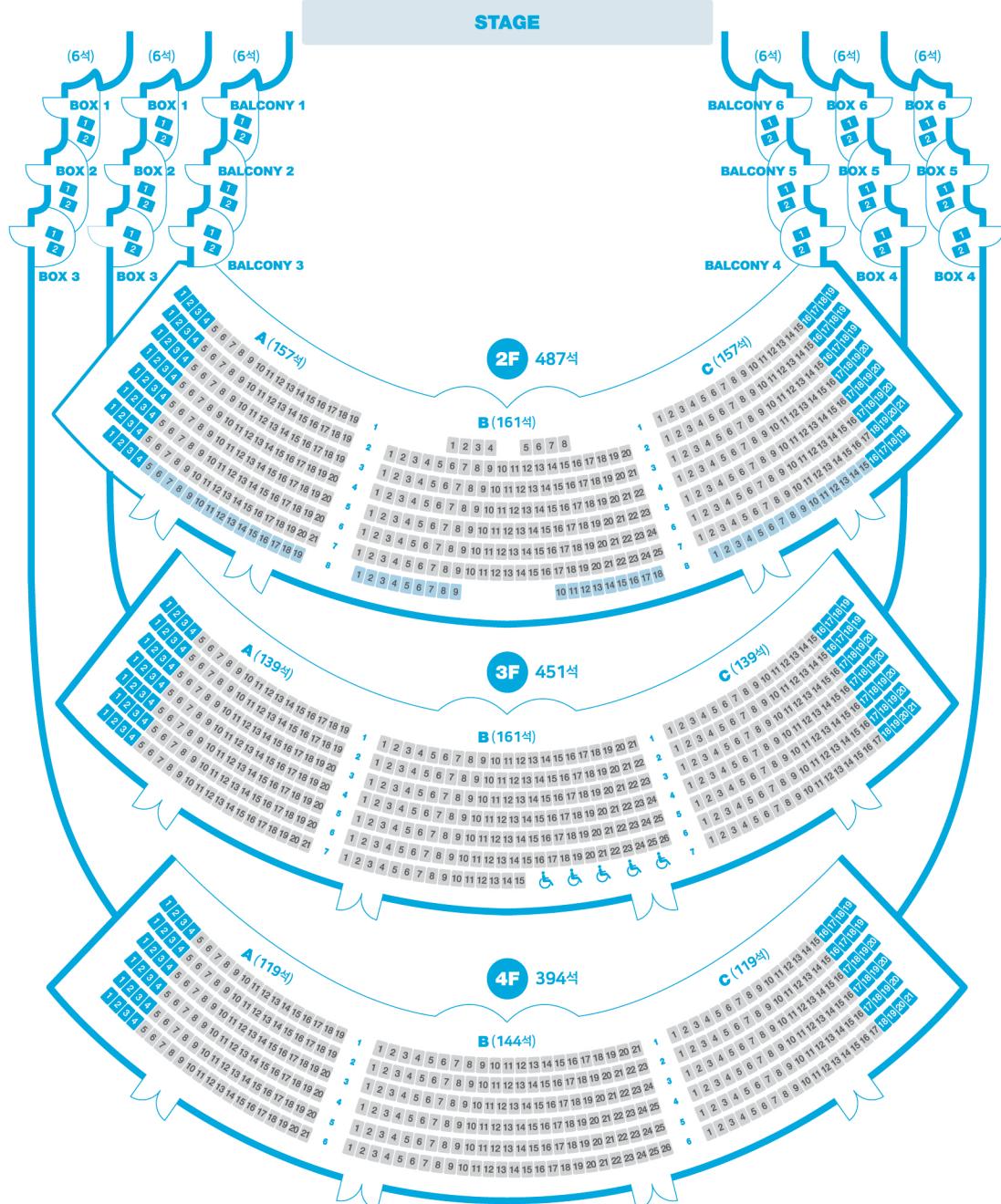


구분	일반판매석	OP석	휠체어석	관람시야제한석	자막시야제한석	총별 합계
1층	850	48	15	38	-	951
2층	363	-	-	76	48	487
3층	378	-	5	68	-	451
4층	334	-	-	60	-	394
합계	1,925	48	20	242	48	2,283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총 2,283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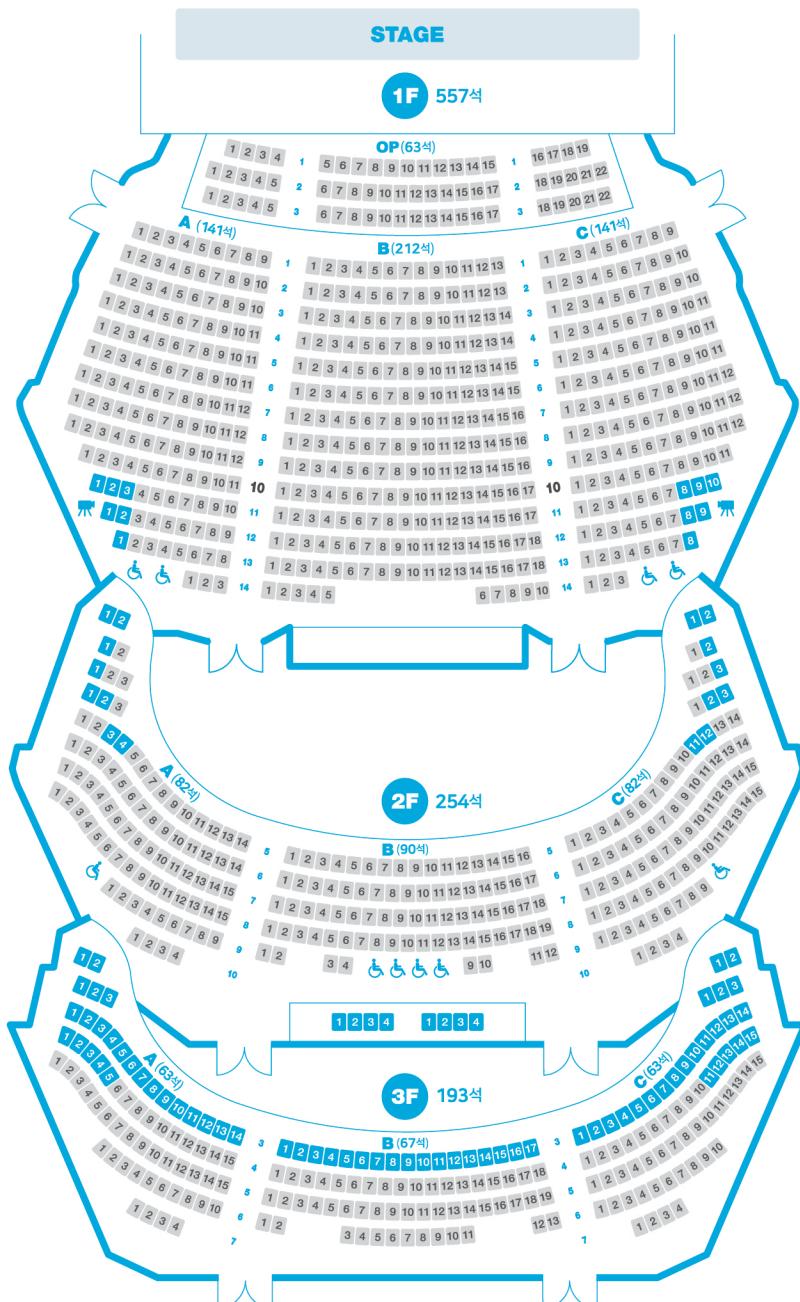
Opera Theater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총 1,004석

CJ Towol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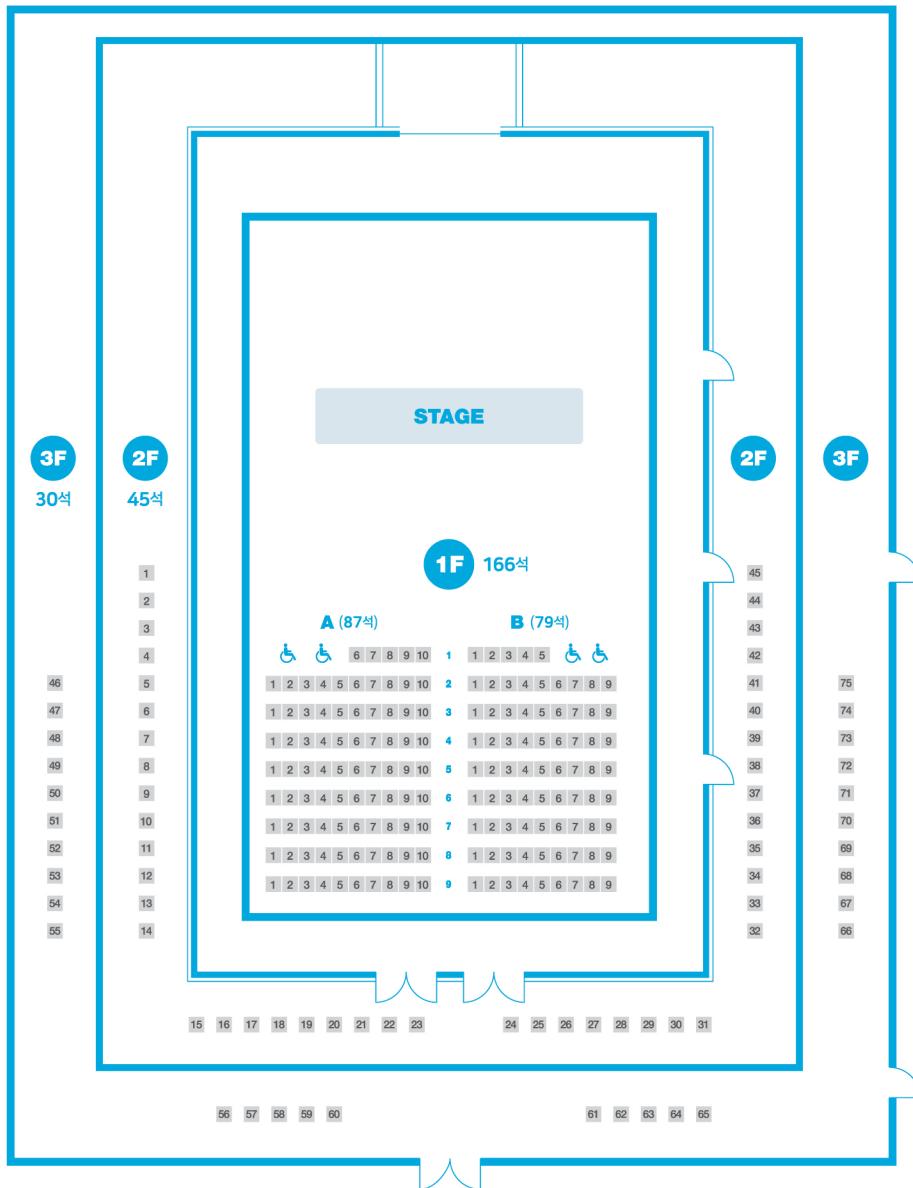


구분	일반판매석	OP석	휠체어석	관람시야제한석	총별 합계
1층	490	63	4	-	557
2층	224	-	6	24	254
3층	128	-	-	65	193
합계	842	63	10	89	1,004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총 241석

Jayu Theater



구분	일반판매석	휠체어석	관람시야제한석	총별 합계
1층	162	4	-	166
2층	37	-	8	45
3층	18	-	12	30
합계	217	4	20	241



예술의전당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406 (우 06757)

<http://www.sac.or.kr>

종합안내 02)580-1300

공연장운영부 02)580-1407